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울산광역시 1년 미만 | 계속 거주자 | | 비규제지역 |
| L'0 | (2023.08.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및 부산광역시, 경상님 | 남도 거주자 | | 711/1/17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형 | 한제 | 택지유형 |
| 없음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4.08.23.(금) | 24.09.02.(월) | 24.09.03.(화) | 24.09.04.(수) | 24.09.10.(화) | 24.09.12.(목)~ 24.09.24.(화) | 24.09.25.(수)~ 24.09.27.(금)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u>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 | 특별공급 | | | | 일반공급 | | | |
|------------|--------|--------------|-------|---------|-------------|-----------------------------|------|--|--|--|
| 건경사격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성 | b, 지역별·면적별 예 | 치금 충족 | 1순위(6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 별 예치금 충족) 가입(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 | | |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사항은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워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구릴이다/필단이다 기준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주택청약통장 거래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합니다. (단, 공급 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위탁자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 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 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C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2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427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제63조 및 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8.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4.09.02.(월) | 24.09.03.(화) | 24.09.04.(수) | 24.09.10.(화) | 24.09.12.(목) ~ 24.09.24.(화) | 24.09.25.(수) ~ 24.09.27.(금)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 ■ (현장접수) 청약통징 | | ■ (PC·모바일) 청약홈 | ■ 견본주택 (주소: 울산 남구 달동 1271-6)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로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 날로부터 6개월 |
| 현배세원기원 |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매 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 과 정에서 체결한 제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49437호 (2024. 08. 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층 8개동 총 803세대
 - [특별공급 416세대(기관추천 73세대, 다자녀가구 120세대, 신혼부부 133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7년 11월 예정(입주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 | 주택형 | 01.11 | 주택 | 백공급면적 | (m²) | 기타 | -1101 | | | | | | 특별공급 | 세대수 | | | | 최하층 |
|------------|----|--------------|----------|------------|------------|----------|----------------------|----------|-------------|-----------|------------|----------|-----------|----------|-----------|----------|-----|-------------|-------------|
| 주택 관리번호 | 밀 |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 총공급 세대수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일반공급 세대수 | 우선배정 세대수 |
| | 01 | 059.9851A | 59A | 59.9851 | 19.6455 | 79.6306 | 37.5957 | 117.2263 | 32.2002 | 39 | 39 | 3 | 5 | 7 | 1 | 5 | 21 | 18 | 2 |
| | | | 84A | | | | | | | 324 | | | | | | | | | |
| | | | 84A1 | | | | | | | 2 | | | | | | | | | |
| | 02 | 084.9938A | 84A2-1 | 84.9938 | 26.7314 | 111.7252 | 53.2700 | 164.9952 | 45.6250 | 15 | 359 | 36 | 51 | 66 | 7 | 32 | 192 | 167 | 14 |
| | | | 84A2-2 | | | | | | | 16 | | | | | | | | | |
| | | | 84A3 | | | | | | | 2 | | | | | | | | | |
| | 03 | 084.9978B | 84B | 84.9978 | 26.8916 | 111.8894 | 53.2725 | 165.1619 | 45.6272 | 101 | 101 | 11 | 14 | 18 | 3 | 8 | 54 | 47 | 4 |
| | 04 | 084.9563C | 84C | 84.9563 | 27.8530 | 112.8093 | 53.2466 | 166.0559 | 45.6049 | 77 | 77 | 7 | 11 | 13 | 2 | 8 | 41 | 36 | 4 |
| 2024000427 | 05 | 084.9732D | 84D | 84.9732 | 27.6723 | 112.6455 | 53.2571 | 165.9026 | 45.6140 | 64 | 64 | 7 | 10 | 12 | 2 | 4 | 35 | 29 | 3 |
| | 00 | 004 00215 | 84E | 04.0021 | 26 7001 | 111 7022 | E2 200E | 1640717 | 45.6346 | 74 | 76 | 7 | 11 | 13 | 3 | 7 | 41 | 2.5 | 1 |
| | 06 | 084.9931E | 84E1 | 84.9931 | 26.7091 | 111.7022 | 53.2695 | 164.9717 | 45.6246 | 2 | 76 | / | 11 | 13 | 3 | / | 41 | 35 | 1 |
| | 07 | 084.9896F | 84F | 84.9896 | 28.6828 | 113.6724 | 53.2674 | 166.9398 | 45.6228 | 23 | 23 | 2 | 3 | 4 | 1 | 2 | 12 | 11 | 1 |
| | 08 | 096.9978A | 96A | 96.9978 | 30.2672 | 127.2650 | 60.7936 | 188.0586 | 52.0688 | 2 | 2 | 0 | 0 | 0 | 0 | 0 | 0 | 2 | 0 |
| | 09 | 096.9987В | 96B | 96.9987 | 30.2453 | 127.2440 | 60.7941 | 188.0381 | 52.0693 | 2 | 2 | 0 | 0 | 0 | 0 | 0 | 0 | 2 | 0 |
| | 10 | 110.9804A | 110A | 110.9804 | 35.6293 | 146.6097 | 69.5572 | 216.1669 | 59.5748 | 58 | 58 | 0 | 15 | 0 | 5 | 0 | 20 | 38 | 2 |
| | 11 | 127.9515A | 127A | 127.9515 | 43.3397 | 171.2912 | 80.2396 | 251.5308 | 68.7068 | 2 | 2 | 0 | 0 | 0 | 0 | 0 | 0 | 2 | 0 |
| | | | | | 합 | 계 | | | | 803 | 803 | 73 | 120 | 133 | 24 | 66 | 416 | 387 | 31 |

■ 주택형 표시 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 059.9851A | | | 084.9938A | | | 084.9978B | 084.9563C | 084.9732D | 084.9 | 931E | 084.9896F | 096.9978A | 096.9987B | 110.9804A | 127.9515A |
|------------------------|-----------|-----|------|-----------|--------|------|-----------|-----------|-----------|-------|------|-----------|-----------|-----------|-----------|-----------|
| 약식표기 | 59A | 84A | 84A1 | 84A2-1 | 84A2-2 | 84A3 | 84B | 84C | 84D | 84E | 84E1 | 84F | 96A | 96B | 110A | 127A |

^{※ 84.9938}A주택형의 약식표기(84A, 84A1, 84A2-1, 84A2-2, 84A3)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84.9938A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첨 시 주택형 내 타입 및 동·호수는 임의배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84.9931}E주택형의 약식표기(84E, 84E1)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84.9931E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첨 시 주택형 내 타입 및 동·호수는 임의배정되며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 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유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 구 분(주택 | 형) | 059.9851A | 084.9938A | 084.9978B | 084.9563C | 084.9732D | 084.9931E | 084.9896F | 096.9978A | 096.9987B | 110.9804A | 127.9515A | 합계 |
|-----------|--|--------|-----------|-----------|-----------|-----------|-----------|-----------|-----------|-----------|-----------|-----------|-----------|-----|
| | 국기 | 가유공자 | 1 | 6 | 2 | 1 | - | 1 | - | - | - | - | - | 11 |
| | 장기복- | 무 제대군인 | - | 6 | 2 | 1 | 1 | 1 | - | - | - | - | - | 11 |
| -1-1-4-41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6 | 2 | 1 | 1 | 1 | - | - | - | - | - | 11 |
| | 기관추천 울산광역시 | | | 6 | 2 | 1 | 1 | 1 | 1 | - | - | - | - | 13 |
| 1200 | 장애인 부산광역시 | | - | 2 | - | 1 | 1 | 1 | 1 | - | - | - | - | 6 |
| | | 경상남도 | - | 2 | 1 | 1 | 1 | 1 | - | - | - | - | - | 6 |
| | 중소기 | 업 근로자 | 1 | 8 | 2 | 1 | 2 | 1 | - | - | - | - | - | 15 |
| 다. | 자녀가구 특팀 | 별공급 | 5 | 51 | 14 | 11 | 10 | 11 | 3 | - | - | 15 | - | 120 |
| <u> </u> | · - - - - - - - - - - - - - - - - - - - | 공급 | 7 | 66 | 18 | 13 | 12 | 13 | 4 | - | - | - | - | 133 |
| 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7 | 3 | 2 | 2 | 3 | 1 | - | - | 5 | - | 24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5 | 32 | 8 | 8 | 4 | 7 | 2 | - | - | - | - | 66 |
| | 합 계 | | 21 | 192 | 54 | 41 | 35 | 41 | 12 | - | - | 20 | - | 41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 구민사 | OF 11 | E 7 F | * - | ±11 = 1 | | 공급 | 금액 | | 계약금 | ∃ (5%) | | | 중도금 | t(60%) | | | 잔금(35%) | | | | |
|-----------------|----------|-------------------------|-----------|-----------|-------------|-----------------------------------|-------------|-------------|-------------|---------------|------------|-------------|------------|------------|------------|------------|-------------|-------------|------------|------------|-------------|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동 구분 (라인) | 층 구 분 | 해당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 | | | | |
| (건중단역기준) | 표기 | (나건) | Œ | 세네구 | 네시미 | 신폭비 | 구기제 | 711 | 계약시 | 24/10/29 | 25/4/14 | 25/8/12 | 26/2/12 | 26/7/13 | 26/11/12 | 27/4/12 | 지정일 | | | | |
| | | | 1층 | 2 | 276,759,000 | 206,241,000 | | 483,000,000 | 10,000,000 | 14,150,000 | 48,300,000 | 48,300,000 | 48,300,000 | 48,300,000 | 48,300,000 | 48,300,000 | 169,050,000 | | | | |
| | | | 2층 | 2 | 280,770,000 | 209,230,000 | | 490,000,000 | 10,000,000 | 14,5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71,500,000 | | | | |
| | | 105동 | 3층 | 2 | 284,208,000 | 211,792,000 | | 496,000,000 | 10,000,000 | 14,8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173,600,000 | | | | |
| 059.9851A | FOA | 3克, | 4층 | 2 | 287,646,000 | 214,354,000 | | 502,000,000 | 10,000,000 | 15,1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175,700,000 | | | | |
| 059.9851A | 59A | 106동 | 5층 | 2 | 291,084,000 | 216,916,000 | | 508,000,000 | 10,000,000 | 15,4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177,800,000 | | | | |
| | | 3호 | 6~9층 | 8 | 299,679,000 | 223,321,000 | | 523,000,000 | 10,000,000 | 16,15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52,300,000 | 183,050,000 | | | | |
| | | | 10~19층 | 18 | 302,544,000 | 225,456,000 | | 528,000,000 | 10,000,000 | 16,4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52,800,000 | 184,800,000 | | | | |
| | | | 20층이상 | 3 | 305,982,000 | 228,018,000 | | 534,000,000 | 10,000,000 | 16,7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53,400,000 | 186,900,000 | | | | |
| | | 101동 | 1층 | 3 | 373,023,000 | 277,977,000 | | 651,000,000 | 10,000,000 | 22,55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227,850,000 | | | | |
| | | 101중 1,5호, | 2층 | 5 | 378,180,000 | 281,820,000 | | 660,000,000 | 10,000,000 | 23,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231,000,000 | | | | |
| | | 103동 | 3층 | 5 | 382,764,000 | 285,236,000 | | 668,000,000 | 10,000,000 | 23,4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233,800,000 | | | | |
| | | 1,2호, 104동 | 4층 | 7 | 387,921,000 | 289,079,000 | | 677,000,000 | 10,000,000 | 23,85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236,950,000 | | | | |
| | | 1호, | 5층 | 7 | 391,932,000 | 292,068,000 | | 684,000,000 | 10,000,000 | 24,2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39,400,000 | | | | |
| | | 107동 1,5호 | 6~9층 | 28 | 396,516,000 | 295,484,000 | | 692,000,000 | 10,000,000 | 24,6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242,200,000 | | | | |
| | | 108동 | 10~19층 | 69 | 400,527,000 | 298,473,000 | | 699,000,000 | 10,000,000 | 24,95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44,650,000 | | | | |
| | | 1,5호 - | 20층이상 | 54 | 405,111,000 | 301,889,000 | | 707,000,000 | 10,000,000 | 25,35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247,450,000 | | | | |
| 084.9938A | 84A | _ | 1층 | 6 | 373,023,000 | 277,977,000 | | 651,000,000 | 10,000,000 | 22,55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227,850,000 | | | | |
| | | 102동 3호 | 2층 | 7 | 378,180,000 | 281,820,000 | | 660,000,000 | 10,000,000 | 23,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231,000,000 | | | | |
| | | 3호, 103동 4호, - | 103동 | ' ⊢ | 103동 | 103동 | 3층 | 7 | 382,764,000 | 285,236,000 | | 668,000,000 | 10,000,000 | 23,4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233,800,000 |
| | | | | 4층 | 7 | 387,921,000 | 289,079,000 | | 677,000,000 | 10,000,000 | 23,85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236,950,000 | | | |
| | | 3克, | 5층 | 7 | 391,932,000 | 292,068,000 | | 684,000,000 | 10,000,000 | 24,200,000 |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39,400,000 | | | | |
| | | 105동 | 6~9층 | 28 | 403,965,000 | 301,035,000 | | 705,000,000 | 10,000,000 | 25,250,000 | 70,500,000 | 70,500,000 | | | 70,500,000 | | 246,750,000 | | | | |
| | | 4,5호, 106동 | 10~19층 | | 407,403,000 | 303,597,000 | | 711,000,000 | | | | | | | 71,100,000 | | 248,850,000 | | | | |
| | | 4,5호 | 20층이상 | | 412,560,000 | 307,440,000 | | 720,000,000 | | | | | | | 72,000,000 | | 252,000,000 | | | | |
| | | | درمران | 10 | 412,300,000 | <i>3</i> 01, 111 0,000 | | 120,000,000 | 10,000,000 | 20,000,000 | 14,000,000 | 14,000,000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 دعرس,000 | | | | |

| | | 101동5호 | | | | | | | | | | | | | | |
|-----------|------|------------------|--------|----|-------------|-------------|--------------|------------|------------|------------|-------------|------------|------------|------------|------------|-------------|
| | 84A1 | 108동5호 | 3층 | 2 | 391,359,000 | 291,641,000 | 683,000,000 | 10,000,000 | 24,15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39,050,000 |
| | | | 2층 | 1 | 386,202,000 | 287,798,000 | 674,000,000 | 10,000,000 | 23,7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235,900,000 |
| | | 101동 | 3층 | 1 | 391,359,000 | 291,641,000 | 683,000,000 | 10,000,000 | 24,15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39,050,000 |
| | 84A2 | 1호, | 4층 | 1 | 395,943,000 | 295,057,000 | 691,000,000 | 10,000,000 | 24,55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241,850,000 |
| | -1 | 108동 1호 | 5층 | 1 | 400,527,000 | 298,473,000 | 699,000,000 | 10,000,000 | 24,95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44,650,000 |
| | | 17 | 6~9층 | 4 | 405,684,000 | 302,316,000 | 708,000,000 | 10,000,000 | 25,4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247,800,000 |
| 084.9938A | | | 10~16층 | 7 | 409,122,000 | 304,878,000 | 714,000,000 | 10,000,000 | 25,7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249,900,000 |
| 004.9930A | | | 2층 | 1 | 386,202,000 | 287,798,000 | 674,000,000 | 10,000,000 | 23,7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235,900,000 |
| | | 101동 | 3층 | 1 | 391,359,000 | 291,641,000 | 683,000,000 | 10,000,000 | 24,15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39,050,000 |
| | 84A2 | 1호 | 4층 | 1 | 395,943,000 | 295,057,000 | 691,000,000 | 10,000,000 | 24,55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241,850,000 |
| | -2 | 108동 1호 | 5층 | 1 | 400,527,000 | 298,473,000 | 699,000,000 | 10,000,000 | 24,95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44,650,000 |
| | | 1조 | 6~9층 | 4 | 405,684,000 | 302,316,000 | 708,000,000 | 10,000,000 | 25,4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70,800,000 | 247,800,000 |
| | | | 10~17층 | 8 | 409,122,000 | 304,878,000 | 714,000,000 | 10,000,000 | 25,7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249,900,000 |
| | 84A3 | 101동1호 108동1호 | 1710 | 2 | 409,122,000 | 304,878,000 | 714,000,000 | 10,000,000 | 25,7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71,400,000 | 249,900,000 |
| | | | 1층 | 1 | 369,585,000 | 275,415,000 | 645,000,000 | 10,000,000 | 22,25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225,750,000 |
| | | | 2층 | 2 | 374,742,000 | 279,258,000 | 654,000,000 | 10,000,000 | 22,7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228,900,000 |
| | | 101동 | 3층 | 2 | 379,326,000 | 282,674,000 | 662,000,000 | 10,000,000 | 23,1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231,700,000 |
| | | 101등 2호, | 4층 | 2 | 384,483,000 | 286,517,000 | 671,000,000 | 10,000,000 | 23,55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234,850,000 |
| | | 108동 2호 | 5층 | 2 | 388,494,000 | 289,506,000 | 678,000,000 | 10,000,000 | 23,9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237,300,000 |
| | | 2포 | 6~9층 | 8 | 393,078,000 | 292,922,000 | 686,000,000 | 10,000,000 | 24,3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240,100,000 |
| 084.9978B | 84B | | 10~19층 | 20 | 397,089,000 | 295,911,000 | 693,000,000 | 10,000,000 | 24,65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242,550,000 |
| | | | 20층이상 | 20 | 401,673,000 | 299,327,000 | 701,000,000 | 10,000,000 | 25,05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245,350,000 |
| | | | 1층 | 2 | 369,585,000 | 275,415,000 | 645,000,000 | 10,000,000 | 22,25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225,750,000 |
| | | 102동 | 2층 | 2 | 374,742,000 | 279,258,000 | 654,000,000 | 10,000,000 | 22,7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228,900,000 |
| | | 2호, 104동 | 3층 | 2 | 379,326,000 | 282,674,000 | 662,000,000 | 10,000,000 | 23,1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231,700,000 |
| | | 2호 | 4층 | 2 | 384,483,000 | 286,517,000 | 671,000,000 | 10,000,000 | 23,55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234,850,000 |
| | | | 40 | | 204,403,000 | 200,517,000 | 0/ 1,000,000 | 10,000,000 | 25,550,000 | 07,100,000 | 07, 100,000 | 07,100,000 | 07,100,000 | 07,100,000 | 07,100,000 | 234,030,00 |

| | | | 5층 | 2 | 388,494,000 | 289,506,000 | 678,000,000 | 10,000,000 | 23,9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237,300,000 |
|-----------|-----|--------------------|--------|----|-------------|-------------|-------------|------------|------------|------------|------------|------------|------------|------------|------------|-------------|
| 084.9978B | 84B | 102동 2호, | 6~9층 | 8 | 400,527,000 | 298,473,000 | 699,000,000 | 10,000,000 | 24,95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44,650,000 |
| 004.33700 | O+D | 2-5 104동 | 10~19층 | 20 | 403,965,000 | 301,035,000 | 705,000,000 | 10,000,000 | 25,25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246,750,000 |
| | | 2호 | 20층이상 | 6 | 408,549,000 | 304,451,000 | 713,000,000 | 10,000,000 | 25,650,000 | 71,300,000 | 71,300,000 | 71,300,000 | 71,300,000 | 71,300,000 | 71,300,000 | 249,550,000 |
| | | | 1층 | 2 | 363,282,000 | 270,718,000 | 634,000,000 | 10,000,000 | 21,7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221,900,000 |
| | | | 2층 | 2 | 368,439,000 | 274,561,000 | 643,000,000 | 10,000,000 | 22,15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225,050,000 |
| | | 105동 | 3층 | 2 | 373,023,000 | 277,977,000 | 651,000,000 | 10,000,000 | 22,55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227,850,000 |
| | | 2호, | 4층 | 2 | 377,607,000 | 281,393,000 | 659,000,000 | 10,000,000 | 22,95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230,650,000 |
| | | 106동 | 5층 | 2 | 381,618,000 | 284,382,000 | 666,000,000 | 10,000,000 | 23,3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233,100,000 |
| | | 2호, | 6~9층 | 8 | 393,651,000 | 293,349,000 | 687,000,000 | 10,000,000 | 24,35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240,450,000 |
| | | | 10~19층 | 18 | 397,089,000 | 295,911,000 | 693,000,000 | 10,000,000 | 24,65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242,550,000 |
| | | | 20층이상 | 5 | 401,673,000 | 299,327,000 | 701,000,000 | 10,000,000 | 25,05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245,350,000 |
| 084.9563C | 84C | | 1층 | 2 | 363,282,000 | 270,718,000 | 634,000,000 | 10,000,000 | 21,7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221,900,000 |
| | | | 2층 | 2 | 368,439,000 | 274,561,000 | 643,000,000 | 10,000,000 | 22,15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64,300,000 | 225,050,000 |
| | | | 3층 | 2 | 373,023,000 | 277,977,000 | 651,000,000 | 10,000,000 | 22,55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227,850,000 |
| | | 107동 | 4층 | 2 | 377,607,000 | 281,393,000 | 659,000,000 | 10,000,000 | 22,95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230,650,000 |
| | | 2,3호 | 5층 | 2 | 381,618,000 | 284,382,000 | 666,000,000 | 10,000,000 | 23,3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233,100,000 |
| | | | 6~9층 | 8 | 386,775,000 | 288,225,000 | 675,000,000 | 10,000,000 | 23,75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236,250,000 |
| | | | 10~19층 | 16 | 390,213,000 | 290,787,000 | 681,000,000 | 10,000,000 | 24,05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238,350,000 |
| | | | 20층이상 | 2 | 394,797,000 | 294,203,000 | 689,000,000 | 10,000,000 | 24,450,000 | 68,900,000 | 68,900,000 | 68,900,000 | 68,900,000 | 68,900,000 | 68,900,000 | 241,150,000 |
| | | | 1층 | 2 | 370,731,000 | 276,269,000 | 647,000,000 | 10,000,000 | 22,35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64,700,000 | 226,450,000 |
| | | | 2층 | 3 | 375,888,000 | 280,112,000 | 656,000,000 | 10,000,000 | 22,8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65,600,000 | 229,600,000 |
| | | 102동 1호, | 3층 | 3 | 380,472,000 | 283,528,000 | 664,000,000 | 10,000,000 | 23,2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66,400,000 | 232,400,000 |
| | | 1 <u>~</u> 105동 | 4층 | 3 | 385,629,000 | 287,371,000 | 673,000,000 | 10,000,000 | 23,65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235,550,000 |
| 084.9732D | 84D | 1호, | 5층 | 3 | 389,640,000 | 290,360,000 | 680,000,000 | 10,000,000 | 24,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238,000,000 |
| | | 106동 1호 | 6~9층 | 12 | 394,224,000 | 293,776,000 | 688,000,000 | 10,000,000 | 24,4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240,800,000 |
| | | 1 | 10~19층 | 29 | 397,662,000 | 296,338,000 | 694,000,000 | 10,000,000 | 24,7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242,900,000 |
| | | | 20층이상 | 9 | 402,819,000 | 300,181,000 | 703,000,000 | 10,000,000 | 25,15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246,050,000 |

| | | | 2층 | 1 | 378,180,000 | 281,820,000 | | 660,000,000 | 10,000,000 | 23,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231,000,000 |
|-----------|------|------------------|--------|----|-------------|-------------|------------|---------------|------------|------------|-------------|-------------|-------------|-------------|-------------|-------------|-------------|
| | | 101동 | 3층 | 1 | 382,764,000 | 285,236,000 | | 668,000,000 | 10,000,000 | 23,4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233,800,000 |
| | | 4호, | 4층 | 3 | 387,348,000 | 288,652,000 | | 676,000,000 | 10,000,000 | 23,8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236,600,000 |
| 00400245 | 84E | 107동 4호, | 5층 | 3 | 391,932,000 | 292,068,000 | | 684,000,000 | 10,000,000 | 24,2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39,400,000 |
| 084.9931E | | 108동 | 6~9층 | 12 | 396,516,000 | 295,484,000 | | 692,000,000 | 10,000,000 | 24,6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242,200,000 |
| | | 4호 | 10~19층 | 30 | 399,954,000 | 298,046,000 | | 698,000,000 | 10,000,000 | 24,9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244,300,000 |
| | | | 20층0상 | 24 | 405,111,000 | 301,889,000 | | 707,000,000 | 10,000,000 | 25,35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70,700,000 | 247,450,000 |
| | 84E1 | 101동4호 108동4호 | 3층 | 2 | 391,359,000 | 291,641,000 | | 683,000,000 | 10,000,000 | 24,15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39,050,000 |
| | | | 1층 | 1 | 367,866,000 | 274,134,000 | | 642,000,000 | 10,000,000 | 22,1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64,200,000 | 224,700,000 |
| | | | 2층 | 1 | 373,023,000 | 277,977,000 | | 651,000,000 | 10,000,000 | 22,55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65,100,000 | 227,850,000 |
| | | | 3층 | 1 | 377,607,000 | 281,393,000 | | 659,000,000 | 10,000,000 | 22,95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230,650,000 |
| 0040000 | 0.45 | 103동 | 4층 | 1 | 382,191,000 | 284,809,000 | | 667,000,000 | 10,000,000 | 23,35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233,450,000 |
| 084.9896F | 84F | 3호 | 5층 | 1 | 386,775,000 | 288,225,000 | | 675,000,000 | 10,000,000 | 23,75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67,500,000 | 236,250,000 |
| | | | 6~9층 | 4 | 398,808,000 | 297,192,000 | | 696,000,000 | 10,000,000 | 24,800,000 | 69,600,000 | 69,600,000 | 69,600,000 | 69,600,000 | 69,600,000 | 69,600,000 | 243,600,000 |
| | | | 10~19층 | 10 | 402,246,000 | 299,754,000 | | 702,000,000 | 10,000,000 | 25,100,000 | 70,200,000 | 70,200,000 | 70,200,000 | 70,200,000 | 70,200,000 | 70,200,000 | 245,700,000 |
| | | | 20층0상 | 4 | 406,830,000 | 303,170,000 | | 710,000,000 | 10,000,000 | 25,5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248,500,000 |
| 096.9978A | 96A | 101동5호 108동5호 | 2층 | 2 | 446,367,000 | 302,393,636 | 30,239,364 | 779,000,000 | 10,000,000 | 28,95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77,900,000 | 272,650,000 |
| 096.9987B | 96B | 101동4호 108동4호 | 2층 | 2 | 441,783,000 | 299,288,182 | 29,928,818 | 771,000,000 | 10,000,000 | 28,550,000 | 77,100,000 | 77,100,000 | 77,100,000 | 77,100,000 | 77,100,000 | 77,100,000 | 269,850,000 |
| | | | 1층 | 2 | 479,601,000 | 324,908,182 | 32,490,818 | 837,000,000 | 10,000,000 | 31,85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83,700,000 | 292,950,000 |
| | | | 2층 | 2 | 486,477,000 | 329,566,364 | 32,956,636 | 849,000,000 | 10,000,000 | 32,45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97,150,000 |
| | | 101동 | 3층 | 2 | 492,207,000 | 333,448,182 | 33,344,818 | 859,000,000 | 10,000,000 | 32,95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85,900,000 | 300,650,000 |
| 110.00044 | 1104 | 3호, | 4층 | 2 | 499,083,000 | 338,106,364 | 33,810,636 | 871,000,000 | 10,000,000 | 33,55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304,850,000 |
| 110.9804A | 110A | 108동 | 5층 | 2 | 504,240,000 | 341,600,000 | 34,160,000 | 880,000,000 | 10,000,000 | 34,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308,000,000 |
| | | 3호 | 6~9층 | 8 | 510,543,000 | 345,870,000 | 34,587,000 | 891,000,000 | 10,000,000 | 34,55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89,100,000 | 311,850,000 |
| | | | 10~19층 | 20 | 515,127,000 | 348,975,455 | 34,897,545 | 899,000,000 | 10,000,000 | 34,95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89,900,000 | 314,650,000 |
| | | | 20층이상 | 20 | 521,430,000 | 353,245,455 | 35,324,545 | 910,000,000 | 10,000,000 | 35,5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91,000,000 | 318,500,000 |
| 127.9515A | 127A | 101동2호 108동2호 | 30층 | 2 | 651,501,000 | 441,362,727 | 44,136,273 | 1,137,000,000 | 10,000,000 | 46,850,000 | 113,700,000 | 113,700,000 | 113,700,000 | 113,700,000 | 113,700,000 | 113,700,000 | 397,9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 이며(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24.03.25. 시행된 「주택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 | 성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1.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 | | |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공급기준 | 당첨자빌 | 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 |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 작 | 격격 처리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 | | | | | | |
| | 전용면적 102m' 이하 전용면적 135m' 이하 모든면적 |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 | |
| | | 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 | | | | | |

| 구분 | |
|-----|--|
| 대상자 | |
| | |
| | |
| | |

IV-1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내용

| | 구 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
|----------|-----------------|--|---|--|
| |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울산 보훈지청 보상과 | |
| | 장기복무 제대 군인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u> </u> |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 복지과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당첨자 선정방법

추천기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12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11007 | | 기준 | 점수 | -12 | |
| 계 | 100 | | | | |
| | | 4명 이상 | 4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3명 | 3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2명 | 25 | | |
| | | 3명 이상 | 15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2명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1명 | 5 | | |
| 비디그선(2)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세대구성(3) | 5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무주택기간(4) | 2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설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IV-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33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당첨자 선정 | 순서 : ①소득구분 - | → ②순위 → ③지역 → | ④미성년 자녀수 - | ⑤추첨 |
|--|--------|---------------------|---------------|------------|-----|
|--|--------|---------------------|---------------|------------|-----|

■ ①소득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8.23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 74 | шe | 소득금액 | | | | | |
|------------------|------------------------|------------------------|----------------------------|----------------------------|-----------------------------|-----------------------------|-----------------------------|-----------------------------|
| 소득구분 |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 처고그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IV-4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 내용 | | | |
|----------------|-----------------|-----|--|---|-------------------------------------|--|
| | |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건축물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구띅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단, 아래 경 * 「농지법」 | 명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 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①무주택기간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35 | 0명 | 5 | 4명 | 25 |
| ②부양가 족 수 | | 1명 | 10 | 5명 | 30 |
| @ T 6715 T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OI スリス太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1871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구분 | | | | 내용 | | |
|-------------|---|-------------------|----------------------------------|---|--|--|
| 대상자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 3추첨 | | | |
| | 단계 | 소득구분 | | 내용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15%) | |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5%) | | 1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면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당첨자 선정방법 | 3단계 | 우선공급(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4단계 일반공급(15%)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부참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08.23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エラナビ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 신생아일반공급, | 130% 초과 | 9,105,863원~ | 10,723,008원~ | 11,407,593원~ | 12,432,268원~ | 13,456,942원~ | 14,481,616원~ |
| 일반공급 |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추첨공급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1천 기구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비고

| - 자산보유기 | | | | | |
|----------------|-----------------|-----|--|--------------------|---|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기ᄎᄆ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건축물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十刊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한다.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집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 | |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고 있는 경우 납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청 | 약예금 | 님이 여 | 치금 | 앤 1 |
|----|-----|------|----|-----|
| | | | | |

| 구 분 |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 | | |
|---------------|----------------------------|---------------------|-----------------------------|--|--|--|
| 전용면적 85m²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 |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 |
| 전용면적 135m²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 |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85m² 초과 | - | 100% |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①무주택기간 | | 1년 이상 ~ 2년 미만 | 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3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35 | 0명 | 5 | 4명 | 25 | |
|---------------------|-----------------|-------|---------------------|-------|-----------------|----|
| ②부양가 족 수 | | 1명 | 10 | 5명 | 30 | |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 | 55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본인 17 배우자 | 본인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0.01 7 7 7 1 7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2.12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베으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 가점제 적용기준 | 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
|-------------------|--|
| 구 분 | 내용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택의 등록 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기주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이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구민등록표조본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주택소유여부 | 및 |
|--------|---|
| 무주택기간 | |
| 산정기준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시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4.09.0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청약홈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 일반공급 | 1순위 | 2024.09.03(화) 09:00~17:30 |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 글린 6 ㅂ | 2순위 | 2024.09.04(수) 09:00~17:30 | |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자 발표 일시 및 확인방법

| 구분 | 대상자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확인 방법 |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
| 일반공급 | 1순위 | 1순위 2024.09.10(화)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르딘증ㅂ |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상기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
|-----------|
| ('청약도움e') |
|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
|-------|--------------------|---|
| 공고단지 | 모집공고에 대현 |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 청약연습 | - 세대원 등록방법 | d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 | - 이용방법 : 공고 | 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 | | - 조회기간 : 2024.09.10.(화) ~ 2024.09.19(목) (10일간) |
| | |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청약홈 |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
| 당첨자발표 | |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 | |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 | |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 - 제공일시 : 2024.09.1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문자 |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 |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VII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 |
|------------------------|--|--|--|
| 제출기한(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4.09.12.(목) ~ 2024.09.24(화) (13일간) | | |
| 제출장소 |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 |
| 유의사항 | - 당첨자로 선정 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여부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진행의 지연 또는 계약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을 위한 자세한 방문 일정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를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 합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제출 기간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표1>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 서류유형 | | | | | |
|-----|------|--------------|----------------------------|--------|--|--|
| 구 분 | 필 수 | 추 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0 | | 특별공급 신청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0 | | 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0 | |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0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0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부지제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공통 |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서류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신청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0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 0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여권번호 필수 기재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Y'설정 발급)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0 |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0 |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다자녀 특별공급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 본인 또는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
| | | | 출산증명서 | 배우자 |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특별공급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주차 확인 가능 필수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 신혼부부 | 0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참조) |
| 특별공급 | | 0 | 비사업자확인각서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 1202 | | 0 | 사실증명서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을 확인해야 함(전년도 기준) |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 |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 | | 0 |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 보인 및 세대워 | •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 | | |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 * 세상 년을 낮 다락보시의 다락하시다니, 시작표면의, 보세 상사에서 상 다양면 가득 년일을 위한 상상자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표4>참조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0 | | 가점산정기준표 기점산정기준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 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노부모 부양 투변공기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년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특별공급 | | 0 | 피부양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직계비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 문한 꽃 배우자 성명, 구민등록민오(첫자다 포함) 전우 등개 성제 또 필급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0 | | 직계비속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기조기계조면 LALUS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 • 견본주택에 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본인 및 배우사 성명, 수민등독민오(뒷사리 포함) 전부 공개 "장제"로 말답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L | | 근근근계ㅎㅎ시(ㅎ세) | 그게비트 | * ㅇ포르 근에 든단 ㅎ의 의단 푼의 ㅇㄹ ㅇ든ㅇ 난 10세 의이한 시니를 비슨한 시나 또 한성근포의 를 경구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주차 확인 가능 필수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0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 1404+1+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0 | | 소득입증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참조) ※ 단,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 0 | 비사업자확인각서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 | | 0 | 사실증명서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을 확인해야 함(전년도 기준) |
| | | 0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 |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 | | О |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 본인 및 세대원 | •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 ĺ | | |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표4>참조 |
|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제3자 | 0 | | 인감증명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함. |
| 대리인 | 0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 신청시 | 0 | | 위임장 | |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 추가사항 | 0 | | 신분증, 인장 | Ell 31 Ol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신문당, 건경 | 대리인 |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부적격 | |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 두식격 통보를 | | 0 | 무주택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망구글 받은경우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u></u> | 0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산기 제 | 즈며서ㄹ | /시처자 | 그비서로)느 치ᄎ 인즈자모 | 지고고인(20240 | 8 23) 이흐 박행부에 하하며 |

- ※ 상기 제증명서류(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
| | 공통서류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
| 근 로 자 | 의반근로자 | | ① 국민건강보험공(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 ² | | |
| -E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인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제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 |
| 로 자 |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①, ② 해당 직장 | | |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①, ② 해당 직장 | |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①, ② 세무서 | | |
| 자 영 업 자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 ① 세무서 또는 등기: ② 국민연금공단 ③, ④ 세무서 | | |
| | 법인대표자 | ① 법인등기부(사본) ② 사업자 등록증(사본)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직인날인) ④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등기소 ②, ③ 세무서 ④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 |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 ② 해당 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 |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행정복지센터 |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②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③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 직장, ③ 세무서 | |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직인 날인이 필수이며,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예외: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 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 증명 | ①,② 세무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됩니다.

■ <표4>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 서류

| 해당자격 |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소유증빙 |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 ①,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자산가액 증빙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지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쳐)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표5>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 서류 | 유형 | | | | | | | |
|---------------|-----|--------------|----------------------------|-------------|---|--|--|--|--|
| 구 분 | 필 수 | 추 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 0 | | 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0 | |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0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 | |
| 75.17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 | | |
| 공통서류 (추첨제)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1) |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0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신청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 | |
| | | 0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
| | | 0 | 가점산정기준표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 | | |
| | | 0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 | | Ο | 당첨사실 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 | | 0 | ᄁᅎᇌ게ᄌᄜᄖᄊᆘ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점제 (추가서류) | |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 0 |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 | 0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 0 | |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가점제 (추가서류)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 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0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0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여권번호 필수 기재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Y'설정 발급)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0 |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제3자 | 0 | | 인감증명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함. |
| 대리인 | 0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임장 날인 |
| 신청시 추가사항 | 0 | | 위임장 | |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 | 0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경우 | | 0 | 무주택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0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 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문의 전화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09.25(수) ~ 2024.09.27(금) 10:00 ~ 17:00시 (3일간) | •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2 1555-5803 |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자격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 서류유형 | | | | |
|---------------|------|--------------|---------------------------------|------|--|
| 구 분 | 필 수 | 추 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0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0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0 | | 인감도장 | 본인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가능하나 제3자 대리 계약 불가 |
| 공통서류 (추첨제) | 0 | | 정부수입인지 | 본인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 | 0 | |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부동산거래신고사항 (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
| | | 0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 자격확인서류 일체 | 해당자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0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비디에이에 시크릭단어표 세글인단데 세글단 이후 세되 |

|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 |
|------------|--|---------|-----|---|--|--|--|
| 제3자 |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 |
| 대리인 신청시 | 0 | 위임장 | | • 견본주택 비치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 | |
| 추가사항 | 0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 | |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 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 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 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10억원 초과(35만원)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717446 | (주)무궁화신탁 | |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 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5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착오입금)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 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 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 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
-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 하며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 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 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 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청약 관련 사항

IX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 경쟁 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 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

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 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 함.)
-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 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 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 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 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조건을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 는 시행위탁자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무아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 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 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 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②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③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 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 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 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수택공급신정사와 그 세내원 선원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 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형:저가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6천만원(비수도권 1 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 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기타 유의사항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층·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 허가청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27호

- ※ 시행위탁자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암반발견 등),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 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 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 주차장(아파트 1,103대, 근린생활시설 26대, 총 1,129대(장애인주차 27대 포함)), 자전거보관소(180대), 경비실,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린이놀이터 외
-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위치, 하역공간 등은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X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활장 공사비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각적표기 | 888 | 계약시 | 24/10/29 |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미끄 |
| 59A | 18,000,000 | 1,800,000 | 1,800,000 | 14,400,000 | |
| 84A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A1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A2-1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A2-2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A3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B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C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D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E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E1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84F | 25,000,000 | 2,500,000 | 2,500,000 | 20,000,000 | |
| 96A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 96B | 28,000,000 | 2,800,000 | 2,800,000 | 22,400,000 | |
| 110A | 32,000,000 | 3,200,000 | 3,200,000 | 25,600,000 | |
| 127A | 38,000,000 | 3,800,000 | 3,800,000 | 30,400,000 | |

(단위 : 원, V.A.T 포함)

-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확장 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마감재, 안방 대형 드레스룸, 주방 또는 복도 팬트리룸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 확장비 | 광주은행 | 1107-021-717452 | ㈜무궁화신탁 | |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01동 501호 홍길동 : 1-05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착오입금)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2.18 개정시행)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증가비용이 정 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 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 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세대는 발코니등 설치 전원박스 및 조명등이 미설치로 감소되고 추후 조명설치가 불가능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 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안방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완강기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
-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

업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 확장 발코니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 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84A2-1세대의 안방 측면 발코니는 비확장 외부 발코니로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진행하여 확장이 불가능 하며, 발코니 외부의 벽면과 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일부 타입(84A1, 84A3, 84E1, 96A, 96B, 127A)의 경우 발코니와 유사한 테라스가 설치되며, 테라스는 건축물 옥상부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 로 확장등이 불가능 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 | | 구분 | 제조사/모델명 | 59A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96A | 96B | 110A | 127A |
|---------------------|----------|---|--|-----------|-----------|-----------|-----------|-----------|-----------|-----------|-----------|-----------|-----------|-----------|
| | 선택 | 하아라이트 1구 + 인덕션 2구 | 삼성: NZ63T5601AK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580,000 |
| 전계합 | 선택2 | 인덕션 3구 (비스포크) | 삼성: NZ63CB6556XG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 선거리 | 선택3 | 인덕션 3구 (블랙) | LG : BEI3GQBI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1,100,000 |
| | 선택 | 인덕션 3구 (화이트) | LG : BEI3WWQLBI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 | 전연 | 삼성 : NQ36A6555CK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 | | | LG : MZ385EBTA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470,000 |
| 47세척기 | 선택 | 14인용, 비스포크 (새틴베이지 패널) | 삼성 : DW60BB815WAP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 꾸씨각기 | 선택 | 14인용, 가구도어 마감 | LG : DIE6PT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1,450,000 |
| | 선택 | 2개소 (거실안방) | LG전자 or 삼성전자 택 | 3,800,000 | 3,900,000 | 3,900,000 | 3,900,000 | 3,900,000 | 3,900,000 | 3,900,000 | | | | |
| | 선택2 | 4개소 (거실인방침살l,2) | LG전자 or 삼성전자 택 | 6,700,000 | 6,800,000 | 6,800,000 | 6,800,000 | 6,800,000 | 6,800,000 | 6,800,000 | | | | |
| | 선택 | 5개소 (거실안방침살1,2)알피룸 | LG전자 or 삼성전자 택 | | 8,100,000 | | | 8,100,000 | 8,100,000 | | | | | |
| 시스템 에어컨 | 선택 | 3개소 (거실구방/식당인방) | LG전자 or 삼성전자 택 | | | | | | | | 5,600,000 | 5,600,000 | 5,600,000 | 5,700,000 |
| | 선택5 | 5개소(거실주방/식당(안방침설1,2) | LG전자 or 삼성전자 택 | | | | | | | | 8,500,000 | 8,500,000 | 8,500,000 | 8,700,000 |
| | 선택6 | 6기소(거실주방/식당인방침살1,2, 침살3 or 서재) | LG전자 or 삼성전자 택 | | | | | | | | 9,800,000 | 9,800,000 | 9,800,000 | 9,900,000 |
| 빌트인 냉장고+감치냉 | - I | 비스포크 파 지 + 키큰장 (새탄베이지 패널) | 삼성전자 (1도어 피키지) RR40C7995AP/7895AP(냉장)+ RZ34C7965AP/7865AP(냉동)+ RQ34C7945AP/7845AP(감치) |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 당시나 당시나 | 있다. | 오브제 패키지 + 시스템 키큰장 (메틸블랙 패널) ※ 59타입 시스템 키큰장 미제공 | LG전자 BC4S1AA1(M, 냉장고 4도아+ BC3K1AA1(M, 김차냉장고3도어 | 5,5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7,100,000 |
| 청정환기시스 (전열교환기 업그 | 템 레이드 | 5단계필터시스템 에어룸콘트롤라(17개소), 에어모니타(이동형 1개소) | 경동나비엔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700,000 |
| 욎 실 스마트 횐 | 기팬 | 271소 (공용욕실+부부욕 실 | 힘펠_FHD3-C150P1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 | | 전동 빨래건조대 | -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 | 주방 · |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 | 2,100,000 | 2,600,000 | 2,700,000 | 2,200,000 | 2,200,000 | 2,600,000 | 2,200,000 | 2,600,000 | 2,600,000 | 3,300,000 | 2,400,000 |

| 바디 : 국산 가구도어 : 수압유럽 상판/벽 : 고급형 앤지니어드스톤 | - | 4,100,000 | 5,150,000 | 6,600,000 | 5,000,000 | 5,000,000 | 5,150,000 | 5,100,000 | 5,150,000 | 5,150,000 | 6,500,000 | 5,200,000 |
|--|--|--|--|--|--|--|---|--|---|--|--|--|
| 거실복도 팬넬 연장 + 하든도어 | - | 6,650,000 | 9,100,000 | 7,950,000 | 10,050,000 | 11,200,000 | 9,100,000 | 8,070,000 | 10,460,000 | 10,460,000 | 14,240,000 | 19,050,000 |
| 기보험 서테니 | 거실주방안방침실 조명변경 | 3,400,000 | 4,200,000 | 4,200,000 | | | 4,200,000 | 4,200,000 | 5,400,000 | 5,400,000 | | 6,300,000 |
| 기단병 연극시 | 거실인방침실 조명변경 | | | | 4,200,000 | 4,200,000 | | | | | 4,100,000 | |
| 쥐방 수납강화형 선택시 | 가실주방안방침실 조명변경 ※ 110A타입은 기본형과 동일 | | 4,850,000 | | | | 4,850,000 | | 5,900,000 | 5,900,000 | 4,100,000 | |
| 2개소 (공용욕실+부부욕실) 병/바닥 타일 업그레이드(벽 600*600/바닥 300*300 커팅타일) + 도기/수전/ACC 업그레이드 + 사워부스 프레임 업그레이드 + 비데알체형 양변기 2개소 적용 | -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인방 붙박이장 | 84A2-1, 84A2-2, 84A3 선택불가 | | 2,950,000 | | 2,950,000 | 2,950,000 | | 2,950,000 | 2,950,000 | | 3,400,000 | |
| 참살 붙박이장 | | 1,250,000 | 1,500,000 | 1,500,000 | 1,250,000 | 1,25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침살 붙바장 | 참살 패밀 모네움션째 선택가 | | 1,250,000 | 1,250,000 | 1,500,000 | 1,50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1,250,000 | |
| 세탁실 선반 적용 | 타입별 구성 상이 | 80,000 | 380,000 | 80,000 | 80,000 | 80,000 | 380,000 | 80,000 | 380,000 | 380,000 | 250,000 | 250,000 |
| 알피룸 내 팬트리 선반 구성 | Εŀh | | 700,000 | | | 900,000 | 700,000 | | 700,000 | 700,000 | | |
| 알륨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_거울+선반 | 긕 | | 1,600,000 | | | 1,600,000 | 1,600,000 | | 1,600,000 | 1,600,000 | | |
| 침살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_거울+선반 | 침살 붙박이장 선택시 선택불가 | 1,600,000 | | 1,600,000 | 1,600,000 | | | 1,600,000 | | | | |
|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포함 |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또는 | | 4,350,000 | | | | 4,350,000 | | 4,350,000 | 4,350,000 | 5,800,000 | |
| 포미엄주방다 포함 | 프미엄 주방가구 중복 선택불가 | | 8,650,000 | | | | 8,650,000 | | 8,650,000 | 8,650,000 | 9,200,000 | |
| 침상 설치 라이브라리왈 슬라이딩 도어 | - | | | | | | | | | | 3,200,000 | |
| | 가실복도 팬넬 연장 + 하든도어 기본형 선택시 관방 수납강회형 선택시 2개소 (공용욕실+부부욕실) 박비닥 타일 업그레이드(병 600*600/비닥 300*300 커팅타일 + 도기/수전/ACC 업그레이드 + 사이뷰스 프레임 업그레이드 + 비데알제형 양변기 2개소 적용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안방 붙박이장 참살 붙박이장 참살 붙박이장 참살 붙박이장 생탁실 선반 적용 알피룸 내 팬트리 선반 구성 알피룸 내 크레스룸 선반 구성 _거울+선반 참살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_거울+선반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포함 프리미엄 주방가구 포함 | 기심복도 판넬 연장 + 하든도어 - 기심주방·안방·침실 조명변경 기심인방·침실 조명변경 기십인방·침실 조명변경 기십인방·침실 조명변경 기십인방·침실 조명변경 기십인방·침실 조명변경 기십인방·침실 조명변경 ※ 110A타입은 기본형과 동일 보이는 타일 업그레이드(박 600~600)세터 300~300 기탕타일 + 도기/수전/ACC 업그레이드 + 내위부스 프레임 업그레이드 + 비데알제형 양변기 2개소 적용 3연동 슬리이딩도어(수동) 안방 분박이장 참실 파말리 드레스룸 선택시 선택물가 대부실 선반 적용 타입별 구성 상이 말피룸 내 팬트리 선반 구성 의 택 일피룸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기울+선반 참실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기울+선반 참실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기울+선반 취실 분박이장 선택시 선택물가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포함 구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또는 프리미엄 주방가구 중복 선택불가 | 기실복도 판넬 연장 + 하든도어 - 6,650,000 기본형 선택시 기실 연방 참실 조명변경 3,400,000 기실 연방 참실 조명변경 기실 연방 참실 조명변경 기실 연방 참실 조명변경 기실 연방 참실 조명변경 ※ 110A타입은 기본형과 통일 *** 110A타입은 기본형과 등의 *** 110A타입은 기본형과 유럽 기본 | 지심복도 팬넬 연장 + 하든도어 - 6,650,000 9,100,000 기본형 선택시 기실 만방침실 조명변경 3,400,000 4,200,000 가실 만방침실 조명변경 기실 구방 만방침실 조명변경 기실 구방 만방침실 조명변경 (사용50,000) 카를타일 + 도가수 첫사 (언고리이트 + 비디알체형 양반기 기사도 적용 1,400,000 1,400,000 1,400,000 연방 붙박이장 84A2-1, 84A2-2, 84A3 선택불가 2,950,000 점실 보박이장 참실 보박이장 1,250,000 1,500,000 보기를 내 팬트리 선반 구성 변화 다양 타입별 구성 상이 80,000 380,000 일피룸 내 팬트리 선반 구성 기울 + 선반 전용 타입별 구성 상이 80,000 380,000 일피룸 내 판리스룸 선반 구성 기울 + 선반 점을 반기 기반 전략시 선택불가 1,600,000 점실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기울 + 선반 점상 분박이장 선택시 선택불가 1,600,000 점실 내 드레스룸 선반 구성 기울 + 선반 점상 분박이장 선택시 선택불가 1,600,000 전략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포함 프리미엄 주방가구 포함 4,350,000 8,650,000 | 구심복도 판넬 연장 + 하든도어 - 6,650,000 9,100,000 7,950,000 기본형 선택시 구상 수납경향형 선택시 구성 안방 침실 조명변경 가실 전망 선택경 (2,000) 4,200,000 4,200,000 가실 만방 침실 조명변경 가실 한방 침실 조명변경 기반 (공용일상 부부욕실) 4,850,000 (2,000) 4,000,000 기통단일 (2,000) (2,0 | 기실복도 팬넬 연장 + 하든도어 - 6,650,000 9,100,000 7,950,000 10,050,000 기본형 선택시 기실 연방 참실 조명변경 3,400,000 4,200,000 4,200,000 구방 수님 강형 선택시 기실 주방 인방 참실 조명변경 4,850,000 4,200,000 관방 나라는 트일 압그레이드(박 600 600) 나라는 300 300 기를 받을 + 도기수전(사CC 압그레이드 + 나이티얼 제항 양반기 2개소 적용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인방 불박이장 84A2-1, 84A2-2, 84A3 선택불가 2,950,000 2,950,000 점실 불박이장 참실 패밀리 드레스룸 선택시 선택물가 1,250,000 1,500,000 1,250,000 원교류 내 팬트리 선반 구성 기울 + 선반 전용 타입별 구성 상이 80,000 380,000 80,000 원과류 내 팬트리 선반 구성 기울 + 선반 전용 타입별 구성 상이 80,000 380,000 80,000 주방 상판 벽 인지나어드스톤 또는 프리미엄 주방가구 중복 선택불가 8,650,000 1,600,000 1,600,000 1,600,000 기상 상판 보다이는 조목상 보다이는 지원 전반 기상 사람보 보다이는 지원 전반 기상 기상 사람보 보다이는 지원 전반 구성 기울 + 선반 기상 | - 6,650,000 9,100,000 7,950,000 10,050,000 11,200,000 기본형 산택시 기본형 산택시 기실인방침실 조명변경 기실인장심인 조명변경 기실(지원) 조명변경 기술(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 6650,000 9,100,000 7,950,000 10,050,000 11,200,000 9,100,000 7년형 산타시 | 구심복도 판넬 연장 + 하[돈다) - 6650,000 9,100,000 7,950,000 10,050,000 11,200,000 8,070,000 기본형 산타시 | - 6,650,000 9,100,000 10,50,000 10,400,000 | 가심복도 판별 연장 + 히톤되어 - 6,650,000 9,100,000 7,950,000 10,050,000 11,200,000 9,100,000 8,070,000 10,460,000 10,460,000 기반형 산택시 가심 한번 참실 조명번경 3,4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기반형 산택시 가심 한번 참실 조명번경 **** **** ************************** | 가심복도 판넬 연당 + 하든모어 - 665000 9,100,000 7,950,000 10,050,000 11,120,000 9,100,000 8,070,000 10,460,000 10,460,000 14,240,000 기원이 선택시 가심으반 전반점을 조망면경 4,85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5,400,000 5,400,000 5,400,000 4,100,000 주방 수난한 참실 조망면경 4,850,000 4,850,000 5,500,000 5,500,000 5,500,000 4,1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

※ 84A2-1, 84A2-2, 84A3, 84A1은 84A타입과 / 84E1은 84E타입과 품목 및 금액 동일함

|■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717452 | ㈜무궁화신탁 | |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01동 501호 홍길동 : 1-05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착오입금)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 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 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 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브랜드별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빌트인 가전 및 불박이가구 선택 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쿡탑[인덕션 및 하이브리드쿡탑]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등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제조사 및 제품 선택에 따라 디자인(색상)이 다르오니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 시 상판 타공 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 시 제조사 및 제품 선택에 따라 디자인(색상)이 다르오니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동일한 크기의 수납가구가 제공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세대분전반에 전용회로의 차단기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고 추후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셔야 합니다.
- 전기오븐 유상옵션 선택 시 전기오븐 하단에 약 13cm 높이의 수납공간이 설치됩니다. 수납공간 보다 큰 물건을 보관할 경우 서랍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선택 시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 높이는 브랜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식기세척기 선택 시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LG전자 식기세척기 제품을 선택 한 경우 가구도어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제품을 선택 한 경우 새틴베이지 패널로 설치되며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프리미엄 주방가구와 식기세척기 유상옵션을 동시에 선택 시 LG전자 식기세척기의 도어는 프리미엄 주방가구와 동일한 가구도어 마감으로 시공되며, 삼성 비스포크의 식기세척기 도어는 새틴베이지 패널로 설치되며 패널변경은 불가합니다. 국산가구(기본형)와 마감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위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으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과 상이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운영상 사유로 냉난방 공용 제품을 설치하 였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천장 단열재가 반영되어 실내기의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및 전용 콘센트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알파룸_팬트리, 알파룸 패밀리 드레스룸, 침실2 패밀리 드레스룸, 주방수납강화, 옵션 선택시 설치 위치를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110A타입 주방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주방/식당에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변경되므로 (거실쪽으로 약 1~1.5m 이동)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시 1도어 냉장고, 1도어 냉동고, 1도어 김치냉장고, 키큰장으로 구성되며 가전, 가구의 배치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시 새틴베이지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4도어 냉장·냉동고, 3도어 김치냉장고, 시스템 키큰장으로 구성되며 가전, 가구의 배치 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9A타입의 경우 비스포크 패키지 선택은 불가하며,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시스템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메탈블랙 패널이 시공되며 계약자가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는 제조사에 따라 표면마감이 상이하오니 모델하우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의 패널색상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동일한 색상으로 설치되며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 시 설치되는 키큰장의 내부 형태 및 구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하며, 키큰장의 형태, 사양, 손잡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와 동시 선택 시 냉장고장 및 키큰장 색상이 변경되며,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청정환기시스템(이하 전열교환기) 관련 유의 사항
-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열교환기 제조사는 크린테크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기본사양 제공품목은 바이패스&프리히터, 프리필터, 헤파필터(H13등급)가 제공됩니다. (세부내용은 견본주택 기본제공 POP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전열교환기 제조사는 경동나비엔 제품으로 설치되며, 기본제공 제품은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는 가감처리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유상옵션사양 제품은 바이패스&프리히터, 5단계 필터시스템(헤파필터(H13등급)+초미세집진필터+탈취필터+전자집진필터+프리필터+UV-LED모듈), 에어룸 컨트롤러(1개소), 이동형 에어모니터(1개소)가 제공됩니다. (세부내용은 견본주택 유상옵션 POP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전열교환기 메인 제어는 에어룸 컨트롤러에서 하며, 거실 혹은 주방 벽에 설치합니다.(설치위치는 타입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전열교환기의 규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7A타입은 전열교환기 2대 설치(다용도실 1대, 실외기실 1대)되어 기본 또는 유상 옵션 선택시 다용도실 천장에 장비 전용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천장 고 높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27A 타입 유상옵션 청정환기시스템 선택시 전열교환기 2대가 업그레이드되며 판매가는 가감처리된 금액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에어룸 컨트롤러 1개소, 이동형 에어모니터 1개 소는 다른 타입과 동일하게 제공됨)
-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스마트 환기팬 관련 유의 사항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에 2개소에 설치되며,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욕실 천정, 점검구, 욕실 등의 설치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전동 빨래건조대 관련 유의 사항
- 전동 빨래건조대는 무선리모콘 제어 타입이며, 조명기구 일체형으로 발코니1에 설치됩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 옵션 선택 시 발코니1에 기본 설치되는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마감 업그레이드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마감 업그레이드 선택 시 설치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프리미엄 주방가구와 마감 업그레이드 옵션을 동시 선택할 시 우드패턴 판넬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히든도어 적용은 안방/침실/공용욕실/팬트리(해당시) 적용 됩니다.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마감 업그레이드 선택 시 아트월 세라믹타일 및 가구판넬 연장시 연장위치 및 패턴디자인은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마감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면 일부 가구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마감 업그레이드 선택 시 일부타입(110A 팬트리3)은 양개도어(가구)에서 히든도어(목창호)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110A 마감 업그레이드와 패밀리 라이브러리 동시 선택 시 마감재 설치 구간이 변경되며 이에 대해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조명 업그레이드+실링팬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조명 업그레이드+실링팬 선택 시 84C, 84D, 110A 타입을 제외하고 주방(또는 식당)의 우물천정이 형성되며, 천장 크기는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조명 업그레이드 선택 시 거실 및 주방(또는 식당)에 설치되는 우물천장 측면(2면)에 조명이 시공됩니다.
- 거실 우물천장 부착형 조명 및 커텐박스 간접조명은 라인 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평면 컨디션에 따라 커텐박스 간접등의 길이 및 적용 부위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조명 업그레이드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부착형 조명 및 커텐박스 간접조명은 우물천장, 커텍박스 길이보다 짧게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조명 업그레이드 선택 시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조명기구는 전용의 컨트롤러(월패드)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조명기구 연결 시 연동이 안될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주방 수납강화형 옵션을 동시에 선택시 기본평면에 적용되는 조명 위치 및 설치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조명 업그레이드+실링팬 옵션은 함께 설치가 필요한 품목으로 각각 선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옵션은 거실 실링팬의 천장보강공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거실 실링팬은 가동초반 진동소음이 들릴 수 있으며 여유공간 내에 높이가 있는 가구, 팬던트 조명, 가전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 바람이 약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실링팬의 날개 범위안에 조명이 있을 경우 바닥에 회전 그림자가 생길 수 있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실링팬에 닿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거실 실링팬은 제공되는 리모콘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위치 연결 및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되며, 무상 A/S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합니다.

- 추후 소비자가 직접 조명 교체 시 등 보강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고급화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욕실 고급화 선택 시 공용 및 부부욕실 2개소의 벽(600*600)/바닥(300*300) 타일, 도기, 수전, 액세서리, 샤워부스프레임(부부욕실만 해당)디자인이 변경되며, 기본 마감 재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위생도기(비데일체형 양변기 및 세면대)에 한하여 제조사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 해당 옵션 선택 시 위생도기의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 등은 자재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 기타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 품목은 디자인을 우선시한 제품으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다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현관 중문 관련 유의 사항
- 현관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로 설치됩니다.
- 압력을 가하여 여닫기를 할 경우 도어댐퍼기능으로 인하여 중문 프레임과 도어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하부레일은 바닥(마루,디딤석)과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비산방지필름이 유리에 부착됩니다.
- 본 공사 시 제품의 상하부 레일,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알파룸 팬트리, 알파룸 패밀리 드레스룸, 침실2 패밀리 드레스룸 관련 유의 사항
- 상기 옵션 선택시 일부 마감, 조명, 배선기구, 소방설비, 환기 디퓨져, 스위치, 천장형 에어컨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품의 포스트, 선반, 서랍, 거울 등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울, 선반, 서랍 등 구성품은 이동식으로 제공되며, 본 시공 시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패밀리 드레스룸 유상옵션은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션과 동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84D타입 알파룸 팬트리 또는 알파룸 패밀리 드레스룸 선택 시 일반 침실도어가 양개도어(가구)로 변경됩니다.
- 해당 옵션은 소비자가 직접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옵션에 강한 충격을 가할 시에는 흔들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옵션에 적용되는 선반의 최대 하중은 15ka(선반 하나당)이며 개인의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옵션에 적용되는 선반, 서랍 등을 조작/설치할 경우 벽체 피어싱에 정확하게 결합하여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수납강화형 관련 유의 사항
- 주방 수납강화형 옵션은 일부 타입(84A, 84A1, 84A2, 84A3, 84E, 84E1, 96A, 96B, 110A)에 적용 됩니다.
- 주방 수납강화형 선택 시 84A, 84E, 96A, 96B타입의 경우 기본 제공되는 알파룸 대신 팬트리(내부 선반가구 포함)와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110A타입 주방 수납강화형 선택 시 침실2와 주방사이에 복도 팬트리(내부 선반가구 포함)가 설치되어 주방/식당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식당에 기본제공되는 단독 아일랜드는 미설치되며 본주방 아일랜드가 연장시공됩니다. 판매가는 가감처리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주방 수납강화형 옵션과 프리미엄 주방, 마감 업그레이드 옵션 모두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며 옵션 조합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 및 가구 디테일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수납강화형 옵션과 조명 업그레이드 옵션 동시에 선택 가능하며, 기본형 주방일때와 주방/식당의 조명, 설비 기기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110A타입의 경우 유상옵션 주방수납강화형과 시스템에어컨 동시 선택 시 주방/식당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되오니 계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패밀리 라이브러리 관련 유의 사항
-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 시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구성항목 중 라이브러리월은 벽체 고정 형태로 제공되며, 벽부형 판넬 패키지, 선반, 서랍은 이동식으로 제공됩니다.
- 본 시공시 판넬, 선반, 서랍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월에 선반, 서랍 등을 조작/설치할 경우 벽체 피어싱에 정확하게 결합하여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라이브리러월은 소비자가 직접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브러리월에 강한 충격을 가할 시에는 흔들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반의 최대 하중은 15kq(선반 하나당)이며 개인의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패밀리 라이브러리에 설치되는 중문은 압력을 가하여 여닫기를 할 경우 도어 댐퍼기능으로 인하여 중문 프레임과 도어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패밀리 라이브러리에 설치되는 중문은 본 공사 시 비산방지필름이 유리에 부착됩니다.
- 패밀리 라이브러리에 설치되는 중문의 좌우 양쪽 끝에 설치된 도어는 고정된 도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패밀리 라이브러리에 설치되는 중문의 중앙에 있는 2개의 도어는 개폐가 가능하며 도어를 닫았을 때, 고무 패킹으로 인한 틈이 발생하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패밀리 라이브러리에 설치되는 중문의 유리 사양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본 시공에 반영되며 유리 제조 업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X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아파트의 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간 협의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 2009년 4월 1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 약신청 바랍니다.
-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 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대지지분 감소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나, 잔금대출 등 개인사정으로 선납한 경우 별도 선납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10%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Ⅷ, 최대지반가속도(a) **0.224g** 임.

■ 단지 내외부 여건

1) 일반공통

당 사업은 2024년 07월 사업계획승인 변경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101, 105, 108동 하부 및 107동 전면에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어린이집, 상가 등 지붕층에 옥상조경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조망권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104, 105, 106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기계/전기 관련 설비(배기휀, 탈취기, 실외기 등)가 104, 105, 106동 전면 외부공간에 설치 될 예정이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각동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 외부조경, 조명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눈부심 및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조명·태양광 발전설비·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VR동영상,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 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계획,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생활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 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외관디자인, 색채, 마감재, 형태, 공용부 창호 형태 및 크기 등) 및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색채, 마감재, 디자인, 창호 형태 및 크기 등)은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견본주택의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디자인, 마감사양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홀,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 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 기 바랍니다.
-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 및 색채 계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주 등의 외관디자인, 색채, 마감재, 형태, 창호 형태 및 크기, 태양광 발 전패널, 난간 색상 및 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기타 시설물 위치, 식재 및 포장계획, 조경 옥외조명, 옹벽 등)은 인허가협의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개선 등의 사 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 도장으로 마감되며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의 돌출장식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동일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 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의 동출입구, 필로티 및 기타 시설물의 규모, 디자인, 마감재 등은 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외관디자인, 마감사양, 색채 등),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주차출입구,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경관조 명 등의 디자인, 마감사양, 위치, 형태, 재질
-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 단지 내 시설물과 외부공간의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경관조명,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빗물처리시스템, 영구배수시스템, 동파방지열선시스템 수목관리, 전기차충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 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환기구(D.A 등)의 면적 및 위치가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는 84A, 84D, 110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붕 및 옥탑에 위성안테나, TV 공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옥외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항공 장애등, 인명 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빛공해, 조망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각 설비별 설치 위치는 사업승인도서를 확인 바라며, 본 시공 시 장비들의 간섭, 전파간섭 등에 의해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일체형, 입면분할식창호 등이 있는 안방 발코니, 거실에서는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며 보행로내 차량의 이동, 주정차, 이사짐차량의 정차등으로 인한 식재, 조경시설물, 조경포장 파손시에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욕실스피커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단지 외관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담장 또는 휀스, 식생울타리 등은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 치될 수 있습니다.
- ※ 소방용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주동 엘리베이터는 16인승 승강기가 설치되고, 101동(2호,3호,4호세대), 102동(3호), 103동(2호), 105동(2호,3호세대), 106동(2호,3호세대), 107동(3호,4호세대) 및 108동(2호,3호,4호세대)의 일부 승강기가 침실 및 안방 등과 인접하여 승강기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각 주동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속도는 최대 120m/min으로 적용되며 에어컨 설비가 없으며, 골조 사이즈에 따라 속도가 낮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보통신등급은 사업승인최초 접수 기준으로 1등급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지하주차장의 주차장 구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시설(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돌봄센터, 관리사무소 등) 평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중앙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공보행통로(옥외EV 포함)에 대하여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공보행통로(옥외EV 포함)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대지의 지분은 입주자의 소유이나 그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바랍니다.
- ※ 당 아파트 대지면적에는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공공보행통로 부분의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고, 입주자가 주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납부 및 차후 공공보행통로 관리/복구 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는 물론 공공보행통로의 유지 관리 또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유지관리상 공공보행통로 보수기관이 보수하였을 시는 소유권자 및 주사용자인 입주자는 공공보행통로 해당 면적만큼 유지보수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공보행통로는 건물이 존속되는 한 관리체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공공보행통로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입 됩니다.
- ※ 아파트 계약 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을 통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아파트로서 준공 전 지능형 건축물 2등급을 획득할 예정이며 해당인증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입주 후 지능형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2) 세대 내부

- ※ 견본주택에 설치된 CG,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등 또 는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침실 붙박이장, 선반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84A, 84D, 110A) **외 견본주택 미건립(59A, 84A1, 84A2-1, 84A2-2, 84A3, 84B, 84C, 84E, 84E1, 84F, 96A, 96B, 127A)**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59A의 주방가구 마감은 건립타입 84D와 마감색상 및 디자인이 유사함 단, 59A의 마루색상, 아트월은 건립 타입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가구(안방 붙박이장, 침실 붙박이장) 마감색상 및 디자인은 전 타입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84A1, 84A2-1, 84A2-2, ,84A3, 84B, 84C, 84E, 84E1, 84F, 96A, 96B는 건립타입 84A와 마감색상 및 디자인이 유사함 단, 단위세대 건립형과 미건립형 공간의 크기 및 형태, 가구 레이아웃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127A는 건립타입 110A와 마감색상 및 디자인이 유사함 단, 단위세대 건립형과 미건립형 공간의 크기 및 형태, 가구 레이아웃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선택형 타입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유리난간대, 손잡이 높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 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127A 제외).
- ※ 주방 창호의 개폐부분에는 유리난간대 창호가 설치되며, 고정창 부분은 별도의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유리난간대가 설치된 창호는 창호의 특성 상 난간대가 있는 곳만 개폐가 가능하고 난간대가 없는 외부 창은 고정되어 열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부욕실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타입(84A1, 84A3, 84E1, 96A, 96B, 127A)의 경우 발코니와 유사한 테라스가 설치되며, 테라스는 건축물 옥상부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확장등이 불가능 합니다.
- ※ 테라스는 건축물 옥상부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입주 후 건축물 유지, 보수, 점검 등을 위하여 세대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테라스 난간의 유리사양, 두께, 형태는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테라스에는 우수, 오수, 배수등이 노출설치 될 수 있습니다.
- ※ 테라스에는 지붕 및 낙하물 방지망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상부세대 입주자의 부주의로 낙하물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96A, 96B타입의 거실 상부는 외기에 접한 공간으로 난방효율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27A타입은 세대규모에 의해 실외기실 및 주방측 테라스에 실외기가 분리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계약전 도면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 127A타입의 테라스 및 실외기 실에는 동일 라인 세대의 오수, 배수를 위한 통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계약전 도면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 테라스 설치세대의 인근세대에서는 테라스 입주자의 테라스 활용에 따른 소음, 냄새, 진동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84A2-1세대의 안방 측면 발코니는 비확장 외부 발코니로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진행하여 확장이 불가능 하며, 발코니 외부의 벽면과 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101, 108동 저층부(2,3층)에는 건축물 디자인을 위한 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하여 조망권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최상층 상부(테라스 하부 포함)는 외기에 접한 공간으로 난방효율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가구(파우더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는 천정배관 등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입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일부 마감자재(시트, 타일,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렵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 단위세대에 시공된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수납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됩니다.
-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미설치되었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로 대체되며, 화재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각종 환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배수, 우수 입상배관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욕실 일부분만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 내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됩니다.
- │※ 다용도실,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평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홈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은 실외기실, 발코니1, 다용도실 높은 단차부위(세탁기 설치부위), 욕조하부, 주방가구, 신발장, 샤워부스 및 도기하부는 제외되며,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 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 계약자가 사용 중 또는 구매 희망하는 가구(식탁, 침대 등) 및 가전기기는 사이즈, 형태 등에 따라 배치 불가 또는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 가스계량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이 협소하여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하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천장고로 인하여 높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에 높이 확인 후 설치 필요합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이 협소하여 세탁 및 손빨래 겸용수전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손빨래겸용수전 사용시 사용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해 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완강기는 관할 소방서 협의에 따라 미적용 할 수 없으며, 설치시에 세부적인 적용 위치는 변경 가능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방후드 상부의 침니의 케이싱 사이즈는 성능 만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배수구나 우수, 배수 입상의 위치 등은 사용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배수구 미사용시(배수구에 악취 방지를 위한 봉수 파괴시) 배수관 내부의 악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높은 단차부위는 제외) 단열성능이 없는 플라스틱도어 또는 동등사양의 도어로 시공예정입니다.
-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욕실, 발코니 등은 상이 합니다.
-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에 따라 단지 내외부 인접건물에 따라 채광일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주동코아 벽면에 근접하여 인접벽면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 홈l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l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 홈loT 서비스(스마트 하늘채 lok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가전제어 서비스의 경우 연동 가능한 제조사 및 가전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월패드, 욕실 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각 세대에 주방TV폰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위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및 난방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설치되며, 각 기능별 분리하여 개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최하 2개층 세대, 최상층 세대의 방범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기타 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위치는 59A타입(주방), 84A타입(복도), 84B타입(복도), 84C/D타입(침실2 출입문 뒤편), 84E타입(복도), 84F타입(주방), 110A타입(침실2 출입문 뒤편), 127A타입(복도) 설치되고, 월패드 위치는 전타입 거실쪽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전반, 통신단자함 및 월패드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상부세대 오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에서 상부세대의 배관을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 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하부 배관커버 포함)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보일러 연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고, 보일러 작동으로 인한 해당 세대 또는 인접세대에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 위치 및 높이는 성능 향상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시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등이 확장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환기시켜야 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 해 주기적인 필터 교환이 필요하며, 필터 교체 시 필터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욕실 벽체 내부에 오픈수전함(급수, 급탕용)이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하부세대에서 오.배수 배관을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에어컨 설치를 위한 벽체매립 냉매배관 박스가 거실과 안방 벽면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거실 아트월 벽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환기, 냉난방, 가스 등)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 보일러 연도 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조건(신재생 에너지원 설치)에 따라 세대 거실에 집광채광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커튼 등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 사양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실외기실의 루버는 자동루버로 설치 될 예정이며, 그 사양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공용부 / 단지 내 환경

-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및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국기게양대는 설치되지 않고 각 동 출입구에 1개소 씩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외부공간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아파트 주동 공용홀의 수직 연속창호는 층간방화, 가압 등의 소방성능 향상을 위하여 연속되지 않는 창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계약 전 해당 창호의 위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보행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탈취기, 배기휀 등의 시설이 해당 시설의 상부공간 등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탈취기, 배기휀 등의 상세 설치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수목, 관목 식재, 시설물, 조형물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 및 수종, 형태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입면색채, 디자인, 마감재,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상),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연못)이 설치되며, 이는 물놀이 또는 활동공간이 아니므로 입주민의 관리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또한, 이의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관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설치된 워터라운지(석가산)등 수경시설 및 경관시설 등은 놀이공간이 아니므로 입주민의 주의를 요하며, 입주민 관리부재에 의한 하자, 테마식재의 임의의 훼손은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이를 오염, 훼손하거나 또는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 ※ 재활용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쓰레기보관소와 동일명칭)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재활용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천창,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휀룸, 실외기, 환기구 (D.A), 천창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재활용보관소는 108동 인근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종인증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니, 해당 규모 및 위치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외부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 보관대는 동 주변 및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 보관대는 필로티 내부 면적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일반 거치대형, 2단 거치대형, 레일 거치대형, 경사 거치대형 등으로 계약자 동의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_1. 다양한 평면 타입이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개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법면 또는 사면,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환기구(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보행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보행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문주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해당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조경시설물, 쓰레기보관소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외관, 저층부의 마감 및 패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동출입구, 옥탑 및 지붕구조물,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색채 및 마감사양 등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의 경우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문주 등 외부시설물, 옥탑 및 지붕구조물 및 디자인을 위한 각종 조형물 등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PC조 포함), 철골조 등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골조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및 조경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대지 현황 상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외곽 일부에 옹벽 또는 돌쌓기 등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상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에 의해 추가 설치 및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 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의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 포장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상업시설 주방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와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동 하부 부대시설(경로당,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관리사무소 등)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기둥구조물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계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2층에 통합하여 설치되며 공동주택 주차구획과는 차단기로 구분됩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진출입구 1개소로 아파트와 공유하여야 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경관조명은 인허가 과정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설치 및 위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 및 주차장 배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닫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추가시설(방풍구획, 도어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통행의 불편, 계약면적에 증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요 방범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102동, 104동, 105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덕트,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덕트,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사와 제휴가된 LG U+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면 입주자가 사용한 충전요금은 각 개인별로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오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바 랍니다.
- ※ 준공 후 LG U+에서 전기차충전설비의 전기사용량 계량을 위해서 LG U+ 명의로 한전 계량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바랍니다.
-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제휴 내용 변경 및 제휴 종료 등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분산 및 집중 배치될수 있으니,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부출입구를 통하여 지하2층 주차장을 이용 시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입점자(이용자)가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않 도록 설치된 차단기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하며, 104동, 105동 지하2층 동출입구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 동별 지하1층에 1개소 설치되며 각 동 세대수의 15%내의 칸수가 적용되고 설치위치에 따라 같은 동의 출입구에 따라 접근성이 차이가 있으며, 무인택배 부 가서비스를 사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용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103동,104동,105동,106 동,108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01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단지 경계면 일부에는 외부와 진입을 차단하는 외부와의 경계울타리가 설치 되지 않으나 인허가 및 현황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구간, 규격, 디자인은 입주자 동의없이 시공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

-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다함께돌봄시설 등),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이며, 기타시설로 외부휴게공간, 조경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무인택배보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주민카페&키즈놀이터, 펫케어, 코인세탁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일부 설치되나, 단지 여건상 주변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울타리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 예정이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고정형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 비품 등)와 운동기기, 골프타석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붙박 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달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및 변경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달로그를 우선합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조립틀을 시공하는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의 강도,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 계획 및 창호 등의 위치 등은 입주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습니다.
-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택배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의 차로는 6미터 이상(일부구간 제외), 높이는 2.3미터 이상이며 주차구획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입니다.
- ※ 지하2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영역이 해당되어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진입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 부출입구를 통한 지하2층 주차장 이용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통과하여 공동주택 주차장에 진입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과 공동주택 주차구획은 차단기로 구분됩니다.
- ※ 본 아파트 복리시설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의 4,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 근린생활시설

- |※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지하2층에 공동주택 주차와 통합 설치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통행도로 및 주차램프를 일부를 공유하며, 지하2층에 공동주택 주차와 통합 계획되어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는 전용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출입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전면, 후면, 측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상업시설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및 주방환기를 위한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인근동에 악취발생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연결된 수평동선(복도)은 1개소가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현황측량결과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감소)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및 보안등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실별 상이하오니 계약전 해당 호실의 천장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입점 후 변경시도 동일)
- ※ 상가별 전원공급, 소방 등 전기, 통신, 소방 시스템 설비가 건축 구조상 각 점포 상부 천장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시 다른 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원격검침 시스템이 없으며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용판넬이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상가별 전기용량은 삼상(380V~220V) 5kW 기본 적용되고, 대용량 전원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기 직접 시공하셔야 합니다.
- ※ 조명기구는 LED 조명으로 시공되며, 등기구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수분양자가 직접 기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주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 시스템 에어컨공사 및 주방 환기는 입점사 공사분 입니다.
- ※ 근린생활시설 가스배관은 공용 복도 및 공용 공간이 없을 경우 매장 외부로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6) 단지 외부 여건

-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 바깥 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녹지, 가로녹지, 공원시설은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101동과 108동 옥탑층에는 소방법에 따라 소화수조 및 펌프가 설치되어 하부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 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 사업지 인근에 산업단지, 시장등이 입지 해있으니 사전에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확인바랍니다.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민 초등학생, 중학생은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배치 대상교 등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당 사업지는 유치원 11권역(달동·삼산·야음지구), 옥동·야음중학교군, 남부고등학교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초등학교는 학생 배치 및 시설 여건상 선암초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 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교육청과 재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배정 초등학교는 추후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변경사항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마감사양,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와 시공시 현장상황, 디자인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 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 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 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층고, 근린생활시설 층고,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 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자연지반 표면은 토양이나 투수성포장재료로 되어있는 포장지역이 있으므로 이사짐 등 차량진입시 침하우려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침하는 입주민이 보 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22호, 2021. 11. 8.)」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을 예정이나 준공 입주후 사용상의 부주의에 대한 하자 및 정기검사는 입주민이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통행을 방해할수 없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단지 내 도로(보도) 등 공동이 사용하는 기반시설과 공유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 태풍 등 바람에 의해 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에 설치한 지주목을 임의로 해체할경우 전도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확인 바랍니다.
- ※ 104동, 105동, 106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됨을 CG, 모형, VR동영상에 표기하였으니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사업부지 내 잔존한 건축물의 경우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 126876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승소 하였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1항 1호 가목(매도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을 경우)에 따라 입주자모집을 진행합니다. 잔존 건축물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 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사항

■ 지하 주차장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주동선 7.0m, 보조동선 6.0m | 지하 1층 : 2.7m(일부구간 2.3m) / 지하2층 2.3m | 2.7m |

■ 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적용)

| ※ '구럭등답에 된한 뉴럭]제21호제3형제21호에 따라 전환경구럭의 형흥 구분을 다듬펴 같이 의무사항 |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 준수함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함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함 |
| |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효율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수도법」제 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각 세대 내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조명설치 (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함 |
| |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함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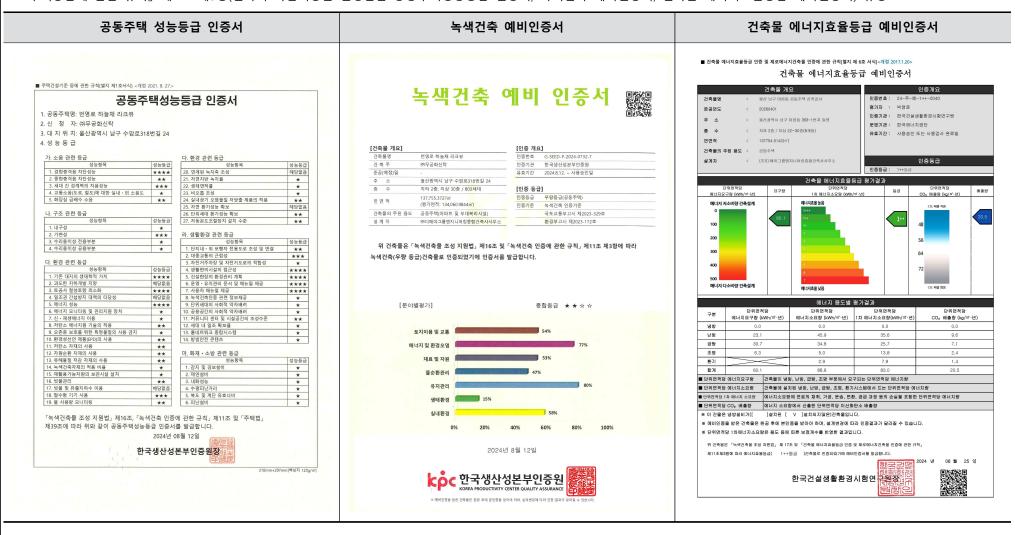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 ~VII)으로 표기

| 구분 | 내진능력(MMI 등급) |
|--------------|--------------|
| 내진능력(MMI 등급) | VII-0.224g |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규정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포함)

|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
| 회 사 명 | ㈜서린디앤씨 | ㈜영광기술단 | ㈜종합엔지니어링다인 | ㈜배정기술단 |
| 감 리 금 액 | ₩3,166,318,540- | ₩713,883,000- | ₩734,497,000- | ₩314,600,000- |
| 사업자등록 번호 | 502-81-37278 | 215-87-17254 | 215-86-64221 | 609-87-01428 |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계자

| 구 | 분 | 사업주체(시행수탁자) | 시공사 | 시행위탁자 |
|-----|------|--|---------------------------|--|
| 상 | 호 | ㈜무궁화신탁 | 코오롱글로벌(주) | ㈜성지디앤디 |
| 주 |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코오롱)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0층 1002호 (우동, 케이엔엔타워) |
| 법인등 | 등록번호 | 110111-2867418 | 110111-0036502 | 180111-1329069 |

|■ 주택도시공사의 주요내용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١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 제01292024-101-0005000호 | 366,264,6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 시행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시공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로부터 시공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 한 것으로 한다.

-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성지디앤디와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신탁회사) ㈜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코오롱글로벌㈜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내에서 신탁재산 (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 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성지디앤디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인 ㈜성지디앤디와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 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성지디앤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성지디앤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인 ㈜성지디앤디와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견본주택



■ 위치안내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운영기간 : **2024.08.30(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분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hanulche-lacview.com/

■ 분양문의: 1555-5803

-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당사 견본주택 또는 고객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